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마루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2호
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2017년 2월 8일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4562호)되면서
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

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.

이에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를 확충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